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914호 2012. 12. 11(화)

포항시보

◀ 조 려 ▶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25호) 2
-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126호) 8

◀ 훈 령 ▶

-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254호) 12

◀ 고 시 ▶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제2012-118호) 17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제2012-119호) 18
- 도로명주소 고시 (제2012-119호) 21
- 낙동정맥트레일 노선 지정·고시 (제2012-121호) 26

◀ 공 고 ▶

-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7호) 31
- 포항시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8호) 37
-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9호) 41
- 호미곶 감사둘레길 조성 계획 공고 (제2012-1798호) 49

회 람									
--------	--	--	--	--	--	--	--	--	--

조 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25호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중 “주민시스템사용 수입금” 을 “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사용 수입금”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 및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주민시스템 사용” 을 “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사용” 으로 하고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를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를 “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항의”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전항의” 를 “제2항의”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항의”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전항의” 를 “제2항의” 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은 <u>회계년도</u>마다 증지 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p>	<p>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회계연도</u>-----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u>발행년월일</u> 4. (생 략) ③ (생 략)</p>	<p>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연월일</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제5조의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사 용) ① <u>시장</u>은 제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u>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u>(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 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 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 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 할 수 있다</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납입하여야한다. 단 신용카드·교통 카드로 증지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정산 일에 따라 변 경 될 수 있다</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지 방세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 ----- ----- ----- ----- -----</p>

현 행	개 정
<p>② (생 략)</p> <p>③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u>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 하여하여야 한다.</u></p> <p>④ <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 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계 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 사용----- <u>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u> -----</p> <p>④-----주민시스템·지방세시스템의 <u>고장 및 그 밖에</u> -----</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 (생 략)</p> <p>② 시장은 <u>전항의 환매를</u> 청구받 았을 때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u>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시금고에서는 <u>전항의 환매증에 의거</u>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 매하여야 한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p> <p>③ -----<u>제2항의</u>-----</p>
<p>제27조(증지의 교환) ① (생 략)</p> <p>② 시장은 <u>전항의 교환</u>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u>별지 제4호 서식의 불출증을</u> 청구인에게 교부한다.</p> <p>③ 시금고에서는 <u>전항의 불출증에 의거</u>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 하여 야 한다.</p>	<p>제27조(증지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 따라</u> -----</p> <p>③ ----- <u>제2항의</u> -----</p>

1. 개정이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 증지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126호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능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제3조(주거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의 최소단위 : 5호 이상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 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
 -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이하시설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제한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말, 사슴, 양 - 100m 나. 소 - 300m 다. 젖소 - 500m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m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 변경과 조례내용 전부개정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다.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한 가축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 및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규모 등을 정함 (안 제4조)
- 라. 제한지역 내 현대화시설 등으로 시설변경에 필요한 기존 가축사육 시설의 증설 규모와 횟수를 정함 (안 제5조)
- 마.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안 제6조)

훈 령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2년 12월 1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훈령 제254호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요금(제5조 관련)

구 분	무료	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 마다	1일 최대 주차 요금
일반차량	1시간	500원	5,000원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차량	2시간	250원	2,500원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1시간	250원	2,500원
국회의원·도의원· 시의원 차량, 언론취재차량	무 료		-
관용차량	무 료		-
직원 및 입주단체 차량	1시간	·등록차량 : 1일 1,500원 ※ 동편야외 : 1일 500원 ·미등록차량 : 일반요금 적용	- - 5,000원
시 주관 행사 등 참석차량	무 료		-

비고)

1. 입차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차량은 당일 8시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직원 및 입주단체 등록차량 중 동편 야외주차장과 다른 주차장을 병행이용시 주차요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다만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직원 및 입주단체 등록차량 중 동편 야외주차장은 감면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주차 요금을 징수 한다. 다만, 1회 주차 요금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p> <p>(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 <th rowspan="2">1일 주차요금</th> <th rowspan="2">월 주차 (직원 및 입주단체)</th> </tr> <tr> <th>최초 1시간</th> <th>1시간 초과 매30분마다</th> </tr> </thead> <tbody> <tr> <td>무료</td> <td>500</td> <td>5,000</td> <td>30,000</td> </tr> </tbody> </table>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주차 (직원 및 입주단체)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매30분마다	무료	500	5,000	30,000	<p>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 요금을 징수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주차 (직원 및 입주단체)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매30분마다												
무료	500	5,000	30,000										
<p>② (생략)</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차 요 금 (제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무료</th> <th style="width: 40%;">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 마다</th> <th style="width: 20%;">1일 최대 주차 요금</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차량</td> <td>1시간</td> <td>500원</td> <td>5,000원</td> </tr> <tr> <td>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차량</td> <td>2시간</td> <td>250원</td> <td>2,500원</td> </tr> <tr> <td>경차하이브리드 차량</td> <td>1시간</td> <td>250원</td> <td>2,500원</td> </tr> <tr> <td>국회의원도의원 시의원 차량, 언론취재차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 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관용차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 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3">직원 및 입주단체 차량</td> <td rowspan="3">1시간</td> <td>·등록차량 : 1일 1,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동편야외 : 1일 5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미등록차량 : 일반요금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 </tr> <tr> <td>시 주관 행사 등 참석차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 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차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차량은 당일 8시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3. 직원 및 입주단체 등록차량중 동편 야외주차장과 다른 주차장을 병행이용시 주차요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다만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직원 및 입주단체 등록차량 중 동편 야외주차장은 감면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무료	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 마다	1일 최대 주차 요금	일반차량	1시간	500원	5,000원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차량	2시간	250원	2,500원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1시간	250원	2,500원	국회의원도의원 시의원 차량, 언론취재차량		무 료	-	관용차량		무 료	-	직원 및 입주단체 차량	1시간	·등록차량 : 1일 1,500원	-	※ 동편야외 : 1일 500원	-	·미등록차량 : 일반요금 적용	5,000원	시 주관 행사 등 참석차량		무 료	-
구 분	무료	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 마다	1일 최대 주차 요금																																		
일반차량	1시간	500원	5,000원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차량	2시간	250원	2,500원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1시간	250원	2,500원																																		
국회의원도의원 시의원 차량, 언론취재차량		무 료	-																																		
관용차량		무 료	-																																		
직원 및 입주단체 차량	1시간	·등록차량 : 1일 1,500원	-																																		
		※ 동편야외 : 1일 500원	-																																		
		·미등록차량 : 일반요금 적용	5,000원																																		
시 주관 행사 등 참석차량		무 료	-																																		
<p>【별표】</p> <p>일일 결산서</p>	<p>【별표 2】</p> <p>일일결산서</p>																																				

1. 개정이유

직원 및 입주단체 월 주차요금을 1일 주차요금제로 변경하고 동편 야외 주차장과 지하 및 서편 야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달리 적용하여 주차요금 부담완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원 및 입주단체 월주차요금 30,000원을 등록차량에 한하여 1일 기준 1,500원으로 하고, 동편 야외주차장은 500원으로 함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11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700-23번지 (지방하천 자명천)내에 암거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07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항시장 박승호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자명천 (지방하천)	연일읍 학전리	700-23번지	암거 설치		71	2012. 12. 7 ~ 2013. 9. 30	허가일로 부터 5년	한동신	

포항시 고시 제2012-119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12-1 외 1건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중전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중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63	좌동	포항시 북구 칠성진길 114	포항시 북구 칠성진길 112-1	2012.11.28	건물군분리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2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157	좌동	포항시 북구 칠성진길 114	포항시 북구 칠성진길 112-2	2012.11.28	건물군분리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3						
4						
5						
6						
7						
8						
9						
10						
11						

포항시 고시 제2012-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102 외 8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5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102	20091201	행정구역명(병포리)을 이용하여 병포리로 명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6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명골마을길 17	20091201	동해안 명골마을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70-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174번길 8-4	20091201	상공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18번길 11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36번길 16-7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1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길147번길 35	20091201	홍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54-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양대로659번길 13	20091201	회양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4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세오로68번길 15	20091201	세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27-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40번길 1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1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77-4	20091201	행정구역명(상대동)을 이용하여 상대로로 명명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1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77-6	20091201	행정구역명(상대동)을 이용하여 상대로로 명명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1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89-7	20091201	행정구역명(상대동)을 이용하여 상대로로 명명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33-1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89-5	20091201	행정구역명(상대동)을 이용하여 상대로로 명명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36-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55-1	20091201	포항역에서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전국에 알려진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5-1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전리 297-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54번길 41-5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로145번길 3-18	20091201	지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구정리 2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정동추로670번길 18	20091201	정동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구정리 2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정동추로670번길 20	20091201	정동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문덕리 1188-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남천로 540-72	20121206	남천을 따라 서쪽으로 이어진 도로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문덕리 18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남천로340번길 33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문흥리 29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오어로298번길 5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용건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송리 3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298번길 23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관로 13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의 중상부에 위치하는 도로로 방위(중)와 지양(원동)을 이용한 도로명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79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75-12	20120327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57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51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70번길 35-1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70번길 61-9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98번길 54-1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57-5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 310	20091201	남천을 따라 서쪽으로 이어진 도로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9-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20번길 48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20번길 46-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5-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20번길 15-20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2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285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04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45-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87	20091201	행정구역 명(대이동)을 이용하여 대이로로 명명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5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43번길 17-8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9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30번길 18-5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3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482번길 19	20091201	기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9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98번길 5	20091201	기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관천리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천245번길 68-1	20091201	구관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서사유	비고
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13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264번길 3	20091201	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범리 4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1142-38	20091201	기북면과 축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범리 4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 1142-5	20091201	기북면과 축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올신리 1110-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로416번길 20-13	20091201	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1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신흥로221번길 23	20091201	신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89번길 12-7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45번길 25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39번길 6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03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57번길 39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70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 181	20091201	행정구역명(장항동)을 이용하여 장항로로 명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2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190번길 29	20091201	장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9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14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5-7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9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35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로 257-1	20091201	행정구역명(장항동)을 이용하여 장항로로 명명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60	20091201	옛 지명(신덕)을 이용하여 신덕로로 명명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94-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항주택로18번길 1	20110630	장항주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어남동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515-3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4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23-5	20091201	옛 지명(용흥)을 이용하여 용흥로로 명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0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73번길 158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0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73번길 170-6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46-13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27-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양로128번길 27-9	20091201	장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9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89	20091201	옛 지명(신덕)을 이용하여 신덕로로 명명	
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파로 18-3	20091201	죽도파출소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파로 20-4	20091201	죽도파출소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1-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동로267번길 22	20091201	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5-18, 70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회양대로659번길 74	20091201	회양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5-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동로113번길 18-1	20091201	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신7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952-85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31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1844번길 14	20091201	죽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32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1844번길 4-12	20091201	죽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신171-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49-16	20090730	죽장면소재지에서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2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함석길 460	20091201	함덕과 석계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함석길로 명명	
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대리 2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2315번길 116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2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795-41	20120402	동쪽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8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2번길 46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장내리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2번길 7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6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459번길 16-55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연길1459번길 16-49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3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266번길 22-7	20091201	용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3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26-2	20091201	흥해에서 한동대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2-121호

낙동정맥트레일 노선 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낙동정맥트레일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 1. 명 칭 :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
- 2.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침곡리, 감곡리, 정자리 기북면 성법리, 탑정리, 덕동리, 기계면 가안리, 남계리 일원
- 3. 지정목적 : 낙동정맥의 산림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기반구축 및 거점 산림휴양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4. 지정기간 : 2012. 12. ~ 해제시 까지
- 5. 지정거리 : 39.1km
- 6. 편입지번 조서 : 붙임 참조
- 7. 편입대상지 도면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에서 열람가능
- 8.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054-270-3244)
붙임 : 편입대상지 내역 1부. 끝.

낙동정맥트레일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요내용	성명	비고
	시·군·면	동·리	지번						
1	죽장	상옥	산157-1	임	5,892	40	숲길 및 쉼터조성		
2	죽장	상옥	산241	도	5,191	128	숲길 및 쉼터조성		
3	죽장	상옥	산157	임	5,612	66	숲길 및 쉼터조성	권두환외1인	
4	죽장	상옥	산156-1	임	19,140	234	숲길 및 쉼터조성	이인모	
5	죽장	상옥	산146-2	임	53,851	128	숲길 및 쉼터조성	이인모	
6	죽장	상옥	산156-2	임	298	18	숲길 및 쉼터조성	손달순	
7	죽장	상옥	618-2	도	56	3	숲길 및 쉼터조성	김영진	
8	죽장	상옥	618-3	전	66	13	숲길 및 쉼터조성	김영변	
9	죽장	상옥	1695	도	285	3	숲길 및 쉼터조성		
10	죽장	상옥	621-2	전	2,605	127	숲길 및 쉼터조성	박용호	
11	죽장	상옥	1410	전	4,555	63	숲길 및 쉼터조성	최종택	
12	죽장	상옥	1431	전	255	14	숲길 및 쉼터조성	박종태	
13	죽장	상옥	1393	전	1,243	77	숲길 및 쉼터조성	박종태	
14	죽장	상옥	1658	구	4,046	7	숲길 및 쉼터조성		
15	죽장	상옥	산48	임	5,714	95	숲길 및 쉼터조성	김순희	
16	죽장	상옥	산41	임	15,330	122	숲길 및 쉼터조성	이춘복	
17	죽장	상옥	산42	임	202,711	161	숲길 및 쉼터조성	손달순외1인	
18	죽장	상옥	0-18	가		115	숲길 및 쉼터조성		
19	죽장	상옥	1693	구	522	8	숲길 및 쉼터조성		

낙동정맥트레일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요내용	성명	비고
	시·군·면	동·리	지번						
20	죽장	상옥	963	답	231	28	숲길 및 쉼터조성	박재철	
21	죽장	상옥	산15-1	임	1,749,561	451	숲길 및 쉼터조성		
22	죽장	상옥	산275	구	1,752	5	숲길 및 쉼터조성		
23	죽장	상옥	산19	임	25,785	153	숲길 및 쉼터조성	경주최씨사성공(상옥)파문중	
24	죽장	상옥	산20	임	1,341,563	1,161	숲길 및 쉼터조성		
25	죽장	상옥	976-3	전	8,130	107	숲길 및 쉼터조성		
26	죽장	상옥	산225-5	임	56,341	48	숲길 및 쉼터조성	김수석외1인	
27	죽장	상옥	산22	임	14,733	80	숲길 및 쉼터조성	곽영주	
28	죽장	상옥	산24-2	임	56,331	320	숲길 및 쉼터조성	최정환	
29	기북	성범	산3	임	659,306	669	숲길 및 쉼터조성	선창산업주식회사	
30	기북	성범	산135	도	5,125	93	숲길 및 쉼터조성		
31	기북	성범	산134-4	임	115,139	586	숲길 및 쉼터조성	선창산업주식회사	
32	기북	성범	산133-1	임	78,603	734	숲길 및 쉼터조성		
33	기북	성범	산130	임	11,901	88	숲길 및 쉼터조성	김영자	
34	기북	성범	산128-1	임	84,300	697	숲길 및 쉼터조성	영천이씨울산공파양백종중	
35	기북	성범	산129	임	30,942	82	숲길 및 쉼터조성	정태락	
36	기북	성범	산124-3	임	13,370	86	숲길 및 쉼터조성		
37	기북	성범	산123-2	임	31,019	223	숲길 및 쉼터조성	황위갑	
38	기북	오덕	산52	임	136,673	790	숲길 및 쉼터조성	단수학외10인	

낙동정맥트레일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요내용	성명	비고
	시.군.면	동.리	지번						
39	기북	오덕	산88	도	5,422	9	숲길 및 쉼터조성		
40	기북	오덕	산41-3	임	30,301	170	숲길 및 쉼터조성	이태동외2인	
41	죽장	침곡	산3-2	임	329,653	109	숲길 및 쉼터조성	정혜운	
42	죽장	침곡	159-2	전	647	100	숲길 및 쉼터조성	임성태	
43	기계	가안	산59-3	임	31,339	228	숲길 및 쉼터조성	김연복	
44	기계	가안	702	전	426	26	숲길 및 쉼터조성	안차문	
45	기계	가안	532	전	1,752	62	숲길 및 쉼터조성	김태진	
46	기계	가안	산72	임	34,909	35	숲길 및 쉼터조성	송관석	
47	기계	가안	산73	임	20,231	212	숲길 및 쉼터조성	이용우	
48	기계	가안	533	전	2,608	19	숲길 및 쉼터조성	김태진	
49	기계	가안	산74	임	52,760	268	숲길 및 쉼터조성	김영구	
50	기계	가안	569-2(565 합필)	전	3,593	29	숲길 및 쉼터조성	강정혜	
51	기계	가안	산82	임	65,455	63	숲길 및 쉼터조성	서용갑	
52	기계	가안	산101	구	660	18	숲길 및 쉼터조성		
53	기계	가안	산83-1	임	10,999	29	숲길 및 쉼터조성	이복우외1인	
54	기계	가안	460	전	1,250	10	숲길 및 쉼터조성	김동술	
55	기계	가안	460-1	수	899	11	숲길 및 쉼터조성		
56	기계	가안	산85-3	수	13,969	51	숲길 및 쉼터조성		
57	기계	가안	산85	임	7,158	85	숲길 및 쉼터조성	서종찬	

낙동정맥트레일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요내용	성명	비고
	시.군.면	동.리	지번						
58	기계	가안	산86	임	107,442	190	숲길 및 쉼터조성	달성서씨가천문중	
59	기계	남계	409-3	답	449	100	숲길 및 쉼터조성	신년	
합계			59필		5,470,099	9,647			

공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7호

공 고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공장 및 각종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음면자약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제5조)
- 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상시 측정 및 저소음 장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정(안 제6조 ~ 제8조)
- 다.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의 엄격한 기준 설정(안 제9조)
- 라.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5일 이상 공사하는 도로 굴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부여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마.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약취방지를 위하여 탈취제 살포 등의 조치 이행을 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바.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후 이행토록 하고,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음·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음·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 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 실천으로 조용하

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소음 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음의 측정방법) ①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저소음 장비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에서 소음·먼지·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소음·먼지·악취 저감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면지약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8호

공 고

포항시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칠 구

포항시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낚시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낚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162km의 수려한 해안선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어 바다 낚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안 제1조, 제2조)
- 나. 바다낚시터 보호관리를 위한 시장과 바다낚시자의 책무 및 교육을 명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바다낚시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바다낚시 밀박사용 및 수집검사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바다낚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다낚시”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유어 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터”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바다낚시자”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자를 말한다.
4. “바닷가”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다낚시의 유어 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 낚시기반시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바다낚시자의 책무) 바다낚시자는 최고·최적의 조건을 갖춘 바다 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류방류 및 바다낚시터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 및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밀밥 사용실태 등 바다낚시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다낚시터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결과에 의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보전, 어장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 시 낚시행위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행위 승선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지도원 위촉) ① 시장은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명예지도원 임무)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주민 계도
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지도

제9조(신분증) ① 시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발급된 신분증을 주민 계도 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밀밥사용) ① 바다낚시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 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밀밥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밀밥 사용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집 및 검사) ① 시장은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밀밥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밀밥을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제12조(검사결과 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 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밀밥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29호

공 고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포항시의회의장이 칙 구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 하는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안 제3조)

- 1)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복지 관련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운영비의 충당(안 제5조)

- 1)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운영비는 포항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
-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다. 입주신청 및 자격(안 제8조)

- 1)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2)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포항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라. 입주자 선정(안 제10조)

포항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마.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노인관련 단체의 장
 - 노인업무관련 포항시 공무원
 - 포항시의회 의원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포항시 사랑의 집(은빛빌리지)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포항시 사랑의 집(이하 “은빛빌리지”라 한다)라 하며, 그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 24B 1L에 둔다.

제3조(위탁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빛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은빛빌리지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은빛빌리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법규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비의 충당) ① 은빛빌리지의 운영비는 포항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인건비

2. 시설유지 운영비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은빛빌리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1.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은빛빌리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 비품은 포항시에 귀속된다.

제8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은빛빌리지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신청자” 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포항시에 계속해서 거주 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 2. 혼자 거동이 가능한 사람

제9조(입주기한) 은빛빌리지에 입주한 사람(이하 “입주자” 라 한다)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망하는 경우
- 2.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포항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내용을 시설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은빛빌리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매월 기본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의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
3.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제13조(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은빛빌리지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포항시 은빛빌리지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빛빌리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 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 관련 포항시 공무원
3. 포항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은빛빌리지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은빛빌리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보수 등) 시장이 은빛빌리지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작 성 요 령

- ⑤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포항시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수)
 - ⑥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가족수(기피자 포함)
 - ⑦ 건강상태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평가판정조사표에 의한 점수(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 ⑧~⑩ 재산 및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의한 산정금액
 - ⑫ 무주택 확인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확인
 - ⑬ 주거형태 : 무상, 월세, 전세, 등 현재의 주거형태 표시
 - ⑭ 부양의무자(부양 기피자) 전체의 재산, 소득 등의 산정금액
 -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 보건복지행정 통합조사표상의 기간
- ※ 굵은 선 안의 내용(④~⑮, ⑰은 읍·면·동에서 작성)

포항시 공고 제2012-1798호

호미곶 감사둘레길 조성 계획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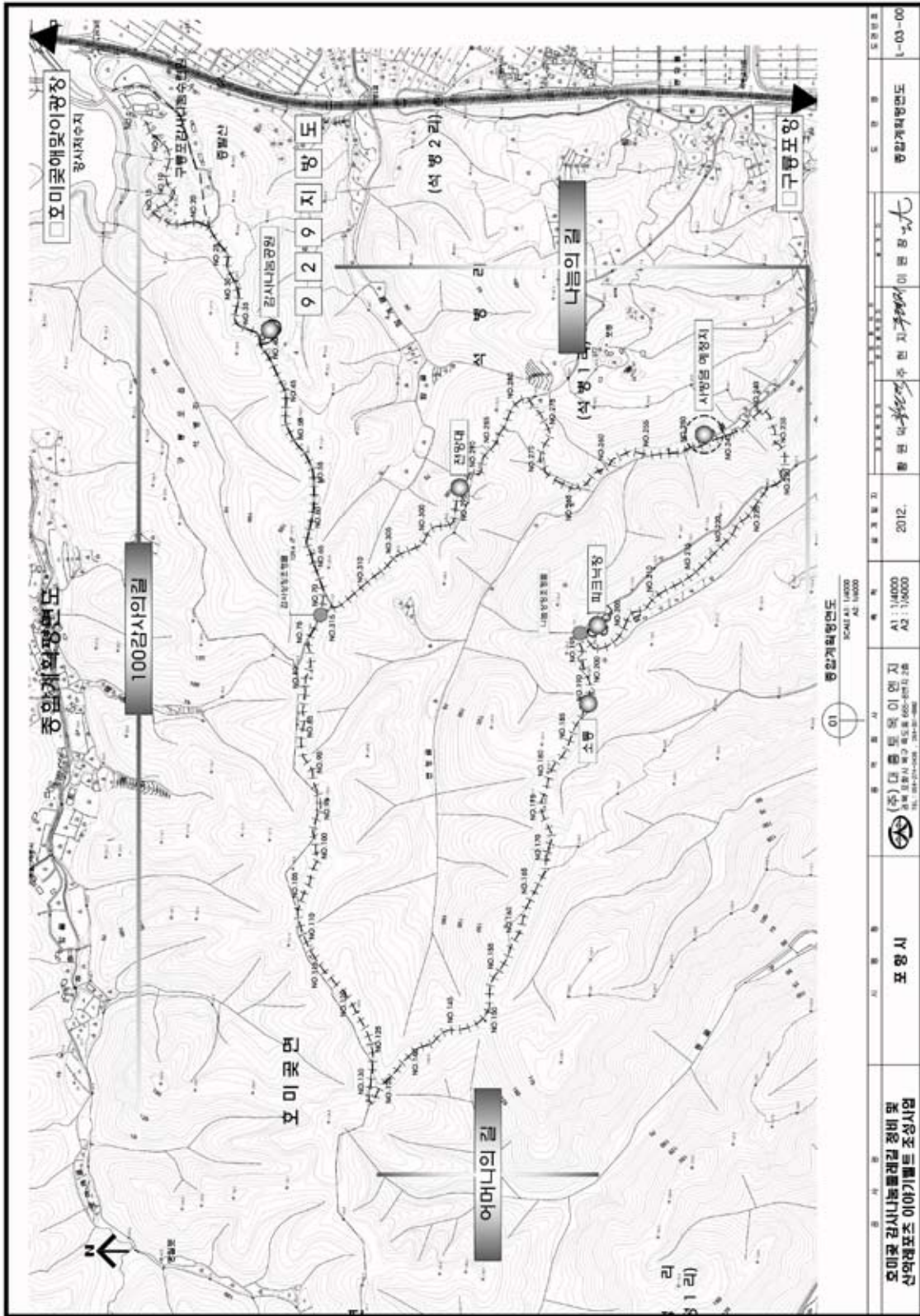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호미곶 감사둘레길” 조성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대상지 내 소유자 주소 불분명 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명 : 호미곶 감사둘레길 조성사업
2.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삼정리, 호미곶면 강사리 일원
3. 총연장 : 8.4km
4. 사업기간 : 2012. 12. ~ 2014. 06. 30.
5. 편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6. 편입대상지 도면 : 붙임 참조
7. 공고기간 : 2012. 12. 10. ~ 2012. 12. 29. (20일간)
8.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 : 공고기간 내
9. 유의사항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
 -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청 도시녹지과(☎054-270-3244)

- 붙임 1. 편입대상지 내역 1부.
2. 사업계획도면 1부. 끝.



출판사명	포항시	출판연도	2012.	출판인원	이원영	도면번호	L-03-00
출판사명	(주)대흥문화이엔지	출판사주소	662-868128	출판사전화	662-868128	출판사팩스	662-868128
출판사명	포항시	출판연도	2012.	출판인원	이원영	출판사명	포항시
출판사명	오미곶 김서니농공원 정비 및 산악레포츠 이야기길트 조성사업	출판사명	포항시	출판연도	2012.	출판인원	이원영

편입용지조서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 고	
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1-6	대	1,144	31	영일군		
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1-8	대	446	37	영일군		
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1-9	대	646	41	영일군		
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11	임	37,888	658	포항시		
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76-4	장	1,018	190	영일군		
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76-5	장	860	12	영일군		
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7	전	3,256	189	김명전		
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7-1	전	1,357	1	표경백		
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57-2	전	1,450	19	성용만		
1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25	임	6,744	151	김중국		
1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5-3	임	28,860	134	김혜경 외 8인		
1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67-2	전	418	69	영일군		
1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267-3	전	950	154	영일군		
1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26	임	11,602	388	영일군		
1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26	임		3,291	영일군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1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91-2	도	4,662	611	국	
1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337-2	임	2,270	263	김복태	
1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5-4	임	51,537	263	이민규	
1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1	임	28,201	12	영일군	
2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2-1	임	7,835	39	배태환	
2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2-2	임	5,653	35	진주하세석병문중	
2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5-8	임	43,636	229	권오혁	
2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334	전	2,757	86	권복수	
2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4-1	임	29,355	82	이오조 외 3 인	
2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41-1	임	10,711	88	나주정씨석병삼문중	
2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34-4	임	9,620	161	김인학	
2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144	도	8,498	235	국	
2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307	전	3,795	8	김흥복외 1인	
2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46	임	34,512	504	영일군	
3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0	임	110,281	839	미창산업주식회사	
31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리	산249	임	8,331	5	윤성수	
3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3	임	6,774	136	진주하세석병문중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3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5	임	4,760	81	오영철	
3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6-1	임	16,066	249	고장식	
3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8	임	4,760	257	손흥안씨참판공파영일군 동해면흥환동대민동	
3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59	임	39,273	602	박태수 외 5인	
3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1	임	47,207	818	영일군	
3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3	임	13,884	249	김용준	
3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2	임	180,893	1,342	영일군	
4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8	임	496	58	김도학	
4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69	임	185,207	1,653	영일군	
4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70	임	298	29	오기준	
4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52	답	60	16	김성갑	
4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0-2	가	367	28		
4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53	답	496	16	김성갑	
4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49	답	1,633	125	김동우	
4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49-1	답	823	65	황보조	
4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48	답	1,210	105	황보조	
4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98	구	24,268	106	국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5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43	답	1,481	47	김상득	
5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1041	전	565	15	장한익	
5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128	임	26,579	388	우진란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127	임	106,314	356	영일군	
54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리	산127	임		120	영일군	
55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산16-1	임	131,198	1,477	영일군	
56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산16-1	임		3,232	영일군	
57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40	답	704	68	이진호	
58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39-1	답	1,567	113	영일군	
59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41	임	496	496	포항시	
60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42	답	417	238	영일군	
61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43	임	377	31	영일군	
62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844	답	1,693	119	포항시	
63	포항시 남구	구룡포	삼정리	산54	임	406,215	127	홍보산업주식회사	
합 계						1,664,374	21,583		